

기고

익숙한 농기계 사용! “부주의+방심=사고”

2001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지금까지 운전을 하면서 여러 차례 작은 교통사고가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기어변속 후 클러치와 액셀레이터를 조작이 서툴러 끼진 시동을 다시 켜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앞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난 것이다. 면허를 발급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긴장했던 탓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어와 클러치 조작 미숙과 부주의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차량 2대가 교행이 가능할 정도로 도로 폭이 넉넉한 아파트 진입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전복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 길은 매일 출퇴근하는 곳이라 눈을 감고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했던 탓에 방심한 것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너무 익숙한 나머지 눈이 내려 특별히 조심해야 했지만 평소처럼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방심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익숙함”이라는 것이고, 다른 점은 부주의와 방심이었던 것이다. 첫 번째는 익숙하지 않아서 부주의했었고, 두 번째는 너무 익숙한 나머지 방심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험했던 대부분의 사고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익숙함”이라는 “부주의와 방심”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부주의와 방심으로 인한 사고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예는 1929년 하인리히는 미국인이 논문에 게재한 “1:29:300”이라는 법칙일 것이다. “1:29:300”이라는 수치는 하인리히가 보험사에 재직하면서 5만여건의 사건·사고를 분석한 통계적 수치로 1건의 중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9건의 경미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300건의 잠재적 사고정후가 있다는 것이다.

하인리히 법칙이 시사하는 내용은 많은 것이다. 하지만 “300”에 해당하는 익숙하지 않은 잠재적 사고정후 발견하고, “29”에 해당하는 익숙하기 때문에 방심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고에 주의한다면 “1”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기계 사고에도 하인리히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리다.

농업진흥청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농기계 교통사고의 경우 치사율(14.5%)이 일반교통사고 치사율(1.6%)에 비해 9배나 높다. 이만 부분을 감안한다면 일반적인 경미 사고나 잠재적 사고정후가 농기계 사고에서는 중대한 사고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1:36(29+300/9)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농기계를 사용할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번기에 주로 사용하고 방치되는 농기계의 특성상 사용 전 반드시 고장이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비는 필수이며, 작업할 때에는 후면 반사경 설치, 작업 반경 내 통행 금지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자에 대한 농기계 정비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경찰에서는 “농기계 사고 감지 알람 시스템” 운용 및 중대사고 대비를 위한 가상훈련을 통해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안전교육은 사고 대응 보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고령경찰서 읍내파출소는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농기계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령경찰서 이병준

학교란 어떤 곳인가. “일정한 목적, 설비, 제도 및 법규에 의거하여 교사가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국어사전에, 조선시대에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하여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를 동등한 반열에 올렸다. 그만큼 스승이 중요하다. 하지만 작금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도, 스승도, 아버지의 지위도 많이 무너져가고 있기에, 이 중에서 특히 교사의 지위는 곤두박질쳐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특히 인격체제가 형성될 때다. 이때 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미래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인격과 학습의 교육이 이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도 서글픈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양천구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학생에게 못하게 제지했다는 이유로 자기 스승을 폭행한 사건 말이다. 참으로 어이없고 서글픈 작태이지 않은가. 참담한 교권 추락 현상이다.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하다는 거다. 2024년도에는 교감 선생의 뺨을 때린 사건도 있었다. 무단 조퇴하려던 학생이 자신을 막았다는 이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이런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양질의 교육을

유 하나를 전복 한 초등학교에서, 경기도 평택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강력한 폭행을 행사해 무려 전치 12주의 부상도 입었다. 광주의 한 여고에서도 학생들의 허위사실 유포와 단톡방 괴롭힘으로 3학년 담임교사가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연일 각종 부정적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2024년 7월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상해·폭행은 2020년 113건, 2021년 239건, 2022년 361건, 2023년 503건 등으로 매년 증가일로에 있다. 큰일이다. 2024년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녹색병원이 교사 3,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에 의하면 교사의 66.3%가 언어폭력을, 18.8%가 신체 위협·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복되는 교사에 대한 각종 폭행은 교육 전반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패륜적 현상이 지속된다면 그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겠는가. 때문에 교권이 붕괴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향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교대생들이나 사범계열 학생들이 진로 변경을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또 다른 부류들은 아예 전공부터 바꾸려는 현상도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가면 결국은 공교

육이 붕괴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대안학교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학적은 본교에 두고 대안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는 형태다. 그런데 이들의 형태를 보면 학과 공부를 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물론 기타 사항도 한숨이 나올 정도고, 그저 말쑥만 부리지 않고 무사히 지내다가 본교로 가길 바랄 뿐이다.

사실 교육이라 칭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대안은 없는 것 같다. 이들은 본교에서 도저히 학습할 수 없기에 오는 극한의 학생들이다. 아침부터 잠자는 학생, 화장만 하는 학생, 복도 등 아무 데나 짐 뺐는 학생, 싸우는 학생, 자신의 손목이나 목 등을 커트 칼로 상처 입히는 학생 등 다양하다. 그야말로 부정 방향의 백화점이다.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과 씨름하는 교사들은 거의 배태랑급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이처럼 교권이 곳곳에서 붕괴 중이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양질의 교육을 바란다면 여파가 아닐까.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자수첩



김준형 기동채본부장

동곡 농협 로컬푸드 부지 증금속 범벅 기준치 구리 22배, 크롬 6배, 아연 1.5배

동곡 농협이 로컬푸드건립을 위해 매입하여 현재는 시범포로 운영 중인 광산구 북룡동 123-1의 토질 분석을 위해 본지가 의뢰한 증금속 검사결과 증금속 구리, 크롬,아연 등이 검출되어 농업용 용지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그 동안 농협 조합장의 대조합원 해명과는 다른 결론이 나와 조합장이 거짓 해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토지는 매입 당시 광산구청으로 부터 행정처분 기간 중이었고 해당 토지 매립과정에서 무기성 오니(산업공정이나, 하수처리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일종으로 불순물이 침전되면서 증금속 등이 함유된 금속, 모래, 점토 등의 형태로 남게됨)가 매립되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무기성 오니 등은 칼륨,구리,비소,납,아연,니켈,불소화합물,페놀류,벤젠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환경에 치명

적인 것은 물론 농지에는 절대 매립해서는 안되는 물질이다.

이러한 무기성 오니는 작물의 뿌리 성장을 억제하여 성장을 지연하고, 토양 오염은 물론 지하수오염 등을 통해 인체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질환 등을 야기하는 환경 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환경처리 관련 법에 의해 그 처리 절차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곡 농협이 매입한 해당 토지(광산구 북룡동 123-1)는 증금속 검사 결과 기준치보다 구리는 22배, 크롬 6배, 아연 1.5배가 초과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광산구청의 관계 공무원을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토지 매립토를 채취하였으나 증금속검사 등을 거른채 일부 관용 검사(토양 색, 냄새, 만져 봄) 만으로 이상 없음을 공문을 통해 동곡농협에 통지하였다.

이러한 광산구청의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오염 의심 신고를 접수한 관

청은 현장조사는 물론 시료채취 및 봉인, 해당 검사기관에 증금속 등 환경 오염물질 검사, 결과 확인 후 통지 및 행정 조치, 원상회복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관능 검사 후 문제가 없다고 통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도 맞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광산구청의 통지를 근거로 해당 동곡농협(조합장 이동운)은 임직원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당 토지는 문제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문제화 시킨 언론사와 기저를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강력히 물렸다고 한다.

사실 이 농지는 동곡농협이 로컬푸드를 하겠다고 구입할 당시인 '20년 1월 6일 이미 골재가 깔려 있어 광산구청으로 부터 원상회복 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으며, 동곡 농협은 이 사실을 알면서 구입했다는 것을 당시 감사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동곡 농협 감사보고서를 보면 그 당시 쇠세 골재가 깔려 있어, 트랙터 로터리 날이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 작물을 심었고, 풀만 무성한 보여주기식 시범포 농지라고 되어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곡 농협은

농업생산물 시범포 사업용도로 벼를 재배 하겠다며, 광산구청과 광주광역시청에 시범포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신고를 하였고, 취득 허가를 받았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을 보면 “사업장 폐기물 불법 매립에 의한 폐기물 관리법 위반 죄의 포괄적 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는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만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동곡 농협과 광산구청의 향후 대처에 조합원과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동곡 농협의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 등에 따른 주요 투자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위반으로 인해 관련자의 업무상 배임 문제도 야기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 이충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스> (062)528-4566
회정실 (내선)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주)제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13,000원·1년147,000원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